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-98호

「보험업법 시행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4월 6일

금융위원회

## 1. 개정이유

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텡스(TEPS)시험의 최고점수가 '18.5월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 텡스(TEPS) 합격점수 변경(안 별표 1의2)

텡스(TEPS) 시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 영어과목 중 텡스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도 625점에서 340점으로 변경

### 3. 의견제출

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: 보험과, 전화 : 02-2100-2963, 팩스 : 02-2100-2947, 이메일: kisoon.kwon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 금융위원회 보험과 (주소 :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)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/법령정보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